

의안번호	2207807
의 퇴 인	김주영의원
회 답 일	2025.2.5.
추계번호	25E05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 확대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의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 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1,645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조 416억원(연평균 △2,08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 상향조정 (안 제12조제3호러목)	-1,645	-2,193	-2,193	-2,193	-2,193	-10,416	-2,083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12조제3호러목 (비과세소득)	○ 근로자의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 확대 - (현행)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개정안)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가 받는 월 25원 이하의 식사대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2조제3호러목 (비과세소득)	0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되며, 부칙에 의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전제
 - 개정안의 부칙에서 동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동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식사대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
 - 이에 따라 동법은 2025년 중 통과되며 2026.1.1.부터 공포되고, 2026.4.1.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추계
-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에 따라 1인당 비과세식대는 비과세 한도 확대 금액 증가율(월 20만원 → 월 25만원으로 1.25배 증가 가정) 만큼 증가한다고 전제
 - 총급여구간별 1인당 비과세식대 평균액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향후 5년간 2023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전제
 - 비과세식대 자료는 2023년 귀속분부터 국세통계연보에서 이용가능
- 비과세 한도 상향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식사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결과, 2023년 기준으로 약 2,192.8억원의 근로소득세수 감소가 예상

- 국세청의 현행 식사대 비과세액('23년 귀속소득 기준)에 대한 총급여구간별 자료를 활용하여, 개정안에 따라 비과세 한도 확대 금액 증가율(월 20만원 → 월 25만원으로 1.25배 증가 가정)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세수효과 추계

[표 2] 식사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근로소득세, 2023년(귀속연도) 기준

총급여 규모	공제 인원 ¹⁾ (A) 명	1인당 평균 비과세액 (만원)			실효세율 ²⁾ (E) %	1인당 세수효과 (F=D×E) 만원	총 세수효과 (G=A×F) 억원
		현행 (B)	개정안 (C)	차이 (D=C-B)			
전체	7,115,108	1.67	2.09	0.42	12.28	0.05	2,192.83
1천만 이하	1	-	-	0.00	18.87	0.00	-
1.5천만 이하	61,485	0.81	1.01	0.20	0.21	0.00	0.27
2천만 이하	316,201	0.97	1.21	0.24	0.90	0.00	6.86
3천만 이하	1,236,658	1.39	1.73	0.35	1.60	0.01	68.54
4천만 이하	1,176,165	1.62	2.03	0.41	3.06	0.01	145.90
4.5천만 이하	520,864	1.71	2.14	0.43	4.62	0.02	103.15
5천만 이하	469,889	1.76	2.20	0.44	5.59	0.02	115.44
6천만 이하	789,682	1.80	2.25	0.45	6.84	0.03	243.66
8천만 이하	1,127,049	1.83	2.29	0.46	8.78	0.04	453.26
1억 이하	691,665	1.85	2.31	0.46	11.60	0.05	371.17
2억 이하	642,411	1.98	2.48	0.50	17.76	0.09	565.92
3억 이하	55,616	1.99	2.49	0.50	26.69	0.13	73.98
5억 이하	19,408	1.98	2.47	0.49	30.94	0.15	29.72
10억 이하	6,207	2.07	2.58	0.52	34.55	0.18	11.07
10억 초과	1,807	2.15	2.69	0.54	40.06	0.22	3.89

주: 1) 국세통계연보 비과세 신청인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자, 2023년 귀속기준

2) 실효세율은 과세표준대비 결정세액 비율

자료: 「재정패널조사」 15차년도 자료 및 「2022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세수효과 요약

- 근로자의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 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1,645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조 416억원(연평균 △2,08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3]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 상향조정	-1,645	-2,193	-2,193	-2,193	-2,193	-10,416	-2,083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강민지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민지	02-6788-4746	min1231@assembly.go.kr